##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048 제출연월일: 2024. 7. 22.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 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 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 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의무 이행 실태의보고 및 명단 공표,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차별대우 금지 및취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법률구조 지원)"을 "(법률구조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 중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채용・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제2항은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채용 의무나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우선고 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행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생 략)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 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 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 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 고용 우수 취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의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표,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 의 합산, 차별대우 금지 및 취업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 사실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 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2조, 36조를 준용한다.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 의5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③ • 4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신 설>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④ (생 략)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 제23조의2(법률구조 등의 지원) ③ (생략) <신 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
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
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
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의
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
금을 결정할 때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 필요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제1항에 따 른 법률구조 지원은 제외한다) 을 할 수 있다.

세26조(적용제외)	

-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2. (생략)
- 3. <u>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 6.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4. ~ 6.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6조제4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1	(채용 시 우대 등)	일부를 포함
2	안 제23조의2제4항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2	(법률구조 등의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법률자문 등 지원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제4항	제3호: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			
1	(채용 시 우대 등)	제3호. 전한적 : 현고적 왕국으로 표정되어 기술적 구세가 단단			
2	안 제23조의2제4항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법률구조 등의 지원)	제1호: 예상 미용이 선평판 10억원 미단 			

#### 2. 상세 사유

#### 【안 제16조제4항】

- 현재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안은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높은 비율(85.6%, '23년도기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존중과 가치를 공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호봉·임금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의무복무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인원, 호봉이나 임금 산정과 관련된 산출내역 등에 대한 현황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가 곤란함

#### 【안 제23조의2제4항】

- O (인원) 연 30명 × (단가) 38.5만원 = (예상 비용) 1,155만원
- ※ 대상자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이 북한의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으로 한정할 예정으로 대상이 많지 않음(인원은 천안함 생존자의 50% 수준 산정)
- ※ 단가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소요 비용 적용

(단위 : 명 / 백만원)

합	계	'19	)년	'20	)년	'21	년	'22	2년	'23	년
인원	금액										
234	90	24	20	46	20	57	20	66	20	41	10

## Ⅲ. 부대의견

$\cap$	해	다	Ю.	_0
O	Чη	Ö	以	П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강성은	이재섭	이민정	김진수
이성진	김성준	김삼석	石선구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재섭	044-202-5711	jaesup2@korea.kr